

서울특별시종로구공공시설내의신문·복권 판매대·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 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4. 12. 15.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시 민 행 정 위 원 회

1. 審査經過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4년 9월 8일 · 종로구청장 원안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4년 9월 8일 원안 회부

다. 상정일자 : 제146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정례회

제4차 시민행정위원회(2004. 12. 15) 상정 ·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생활복지국장 박 종 인)

가. 제안이유

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대체 제정됨에 따라 조례의
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○ 관련법 개정에 따라 “65세 이상 노인인 생활보호대상자”를 “65세 이상
노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”로 변경 (안 제1조)

○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 시 장애인이 복수 신청할 경우 장애인 등급에
따라 생활보호법에 의한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던 것을 국민기초생활
보장법에 의한 대상으로 변경 (안 별표)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보고자 : 전문위원 박 성 열) —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

4. 質疑 및 答辯 要旨 (생 략)

5. 討 論 要 旨 (없 음)

6. 修 正 案 의 要 旨 (없 음)

7. 審 査 結 果 : 원안가결

(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함)